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2,210,686	12,966,321
일반회계	404,962,298	12,148,869
특별회계	27,248,388	817,452
공기업특별회계	16,404,577	492,137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404,577	492,137
기타특별회계	10,843,811	325,3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7,990	18,24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59,414	34,7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76,532	35,296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31,317	9,9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568,558	227,05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75,73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